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공직후보자등에관한정보의수집및
관리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총리 (인사혁신처 소관)
제출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대통령 인사사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의 공직 후보자등의 정보수집·관리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비서실장 외에 법무부장관에게도 위탁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공직후보자에 관한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권한의 위탁대상 기관에 법무부 장관 추가(안 제10조의2)

나. 공직후보자등의 정보의 수집·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기관에 법무부 장관 추가
(안 제10조의3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국가공무원법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대통령령 제 호

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

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“대통령비서실장”을 “대통령비서실장 및 법무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10조의3 중 “대통령비서실장”을 “대통령비서실장 및 법무부장관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1 정안
제10조의2(권한의 위탁) ① 인사혁신처장은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0조 또는 「정부조직법」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·위촉하는 직위 등에 대한 인사사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제2조에 따른 정보의 수집·관리 권한을 <u>대통령비서실장</u> 에게 위탁한다.	제10조의2(권한의 위탁) ① 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대통령비서실장 및 법무부장관</u> -----.
② <u>대통령비서실장</u> 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권한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무사항을 정할 수 있다.	② <u>대통령비서실장 및 법무부장관</u> ----- ----- -----.
제10조의3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인사혁신처장(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<u>대통령비서실장</u> 을 포함한다)은 이 영에 따른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	제10조의3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----- ----- ----- ----- <u>대통령비서실장</u> 및 <u>법무부장관</u> ----- -----

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 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 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 다.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--	-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인사혁신처 인재기획담당관	
연 락 처	(044) 201 - 8544